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2.05.19]

(제정) 2022-05-16 훈령 제 124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직자와 그에 파견된 공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시 감사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포함한다)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에 대한 조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영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시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한다)

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시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결과 통보를 받은 자에게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에 따라 상담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구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원수행사인으로서 공무원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세부징계기준)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훈령 제1242호, 2022.5.16.>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